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48

발의연월일: 2021. 4. 1.

발 의 자:조경태·윤두현·서범수

김태호・김상훈・조수진

박완수 · 정동만 · 구자근

정경희 · 곽상도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교육부장관이 특수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매년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특수교육 현황, 주요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책무를 정부에서 실제적인 시행 주체인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법률 제 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부는"을 "교육부장관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
고서) ① <u>정부는</u> 특수교육의	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	
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	
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